

---

제2023-4회

**중앙운영위원회  
별첨자료**

---

2023. 2. 10.

# **보고안건 별첨자료**

---

보고안건 제2호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 보고**

---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VOK 자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카이스트 방송국 국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방송국은 '카이스트 방송국' 또는 'Voice of KAIST(VOK)'라 칭한다.

#### 제2조(소재)

본 방송국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

#### 제3조(목적과 활동)

본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활동을 한다.

1. 본원 언론 기구로서의 연구 및 활동
2. 건전한 여론 조성 및 이의 효율화
3.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교류 기회 제공

#### 제4조(구성)

- ① 본 방송국은 국원과 지도교수로 구성된다.
- ② 본 방송국은 방송 업무를 위하여 국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을 둔다.
- ③ 본 방송국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
- ④ 본 방송국은 홍보팀, 디자인팀, 아카이빙팀, 복지팀을 둔다.

⑤ 국장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구성원

### 제1절 국원

#### 제5조(국원의 구분)

본 방송국의 국원은 수습국원, 정국원, 명예국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국원의 의무)

모든 국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국칙을 준수할 의무
2. 성실히 방송국 활동을 할 의무
3.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존중할 의무

#### 제7조(징계의 구성)

국장은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국원에게 다음 징계 중 하나를 부여할 수 있다.

1. 경위서 작성
2. 경고 조치 부과
3. 벌금 징수

#### 제8조(국원의 자격 박탈)

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 제9조(벌금 징수)

- ① 벌금은 회의, 행사의 리허설,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국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국장이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징수를 면제한다.
- ② 회의 지각은 개회 시각보다 늦게 참가하는 것으로 정한다.
- ③ 리허설 지각과 행사 지각은 집합 시각보다 늦게 집합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모든 벌금의 금액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의장과 함께 의결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⑤ 국장은 기타 사유로 인한 벌금 징수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국장은 본원과 방송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원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습국원)

① 수습국원은 정국원에 의해 선발된 재학생 중 수습 기간에 있는 국원으로 한다.

② 수습 기간은 선발 직후부터 정국원 임명 시점까지로 한다.

③ 수습 기간은 이 국칙에서의 방송국 활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수습국원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

#### 제12조(정국원)

① 국장은 정국원의 평가를 거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국원만을 정국원에 임명한다.

② 정국원의 임명 시점은 가을학기 첫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국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이듬해 가을학기까지로 한다. 다만, 국장과 부국장은 임원의 임기 종료를 정국원의 임기 종료로 정한다.

#### 제13조(명예국원)

① 국장은 임기 동안의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국원만을 명예국원에 임명한다. 다만, 정국원 이외에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도 국장의 판단하에 명예국원에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국원은 방송국 장비를 대여료 지불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대여 기간이 제4장의 방송국 활동과 겹치는 경우 방송국 활동을 우선으로 장비를 대여한다.

### 제2절 임원

#### 제14조(임원의 구성)

① 본 방송국은 국장, 부국장, 총무,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 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국장, 부국장, 총무를 국장단이라 한다.

③ 국장단,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을 운영위원회로 둔다.

#### 제15조(국장)

① 국장은 방송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② 국장은 방송국 외부에 대해 본 방송국을 대표한다.

③ 국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임시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제16조(부국장)

① 부국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부국장은 국장 사고 시 복귀할 때까지 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17조(총무)

① 총무는 본 방송국의 회계를 담당하고 일반적 재정권을 행사한다.

② 총무는 각 학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정국원에게 재정권을 행사한 명세를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국원은 보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제18조(부장)

① 부장은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을 일컫는다.

②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부장은 타 부서나 타 팀과의 철저한 업무 경계 보존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19조(팀장)

① 팀장은 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 복지팀장을 일컫는다. 복지팀장은 부국장이 겸임한다.

② 팀장은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팀장은 타 부서나 타 팀과의 철저한 업무 경계 보존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써

야 한다.

#### 제20조(임원 후보의 자격)

- ① 국장, 부국장의 자격은 1년 이상 활동한 정국원으로 한다.
- ② 총무, 부장, 팀장의 자격은 그 해 임명된 정국원으로 한다.
- ③ 모든 임원의 자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한다.
- ② 국장과 부국장은 제1회 정기 총회에서 국장단 선출 선거로 선출한다.
- ③ 부장은 제2회 정기 총회에서 각 부서의 재량으로 선출한다.
- ④ 총무는 제2회 정기 총회에서 국장단 선출 선거로 선출한다.
- ⑤ 팀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전임자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 제22조(국장단 선출 선거)

- ① 국장단은 국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국장단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국장단직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국원 모두이다.
- 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
- 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
- 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
- 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
  - 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 ⑦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의장은 국장과 부국장이 후임 국장단을 지명하여 선출하는 것과 지명된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제23조(임원의 임명)

- ① 임원은 국장이 임명한다.
- ② 국장, 부국장, 총무, 부장은 제2회 정기 총회 폐회 직후 임명된다.
- ③ 팀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임명된다.

#### 제24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후임자의 임명 시점까지이다.

#### 제25조(임원직의 중임과 겸임)

- ① 모든 임원직은 중임할 수 없다.
- ② 총무, 부장, 팀장은 국장단직을 제외한 다른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 제26조(임원의 탄핵)

- ① 국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② 5명 이상의 정국원은 연서를 통해 국장이나 부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③ 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

#### 제27조(임원의 궐위 시 조치)

- ① 국장의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 ② 부국장, 총무, 부장, 팀장의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4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 ③ 임원의 궐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지도교수의 임명과 역할)

지도교수는 본원 총장이 임명하며 방송 업무 전반을 감독한다.

## 제3장 회의

### 제1절 총회

#### 제29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비전토론회로 구분된다.

#### 제30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1년 이하인 명예국원을 합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제3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다만, 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국장으로 한다.

#### 제3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

1. 제1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중간고사 전 마지막 회의의 직전 회의(5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의 직전 회의(13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총회와 비전토론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국장의 소집요구

2. 부국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국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제33조(총회 참가 의무)

모든 정국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 제34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

총회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장 및 부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 제36조(국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

- ① 개별 조항 개정 안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전면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37조(부재자의 의결)

- ①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국원 또는 국장의 동의를 받은 정국원에 한한다.
- ②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의사를 의장에게 표명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절 국원회의

#### 제38조(국원회의의 구분)

국원회의는 정기 국원회의, 임시 국원회의, 정국원회의로 구분한다.

#### 제39조(국원회의의 의장)

국원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 제40조(국원회의의 소집)

- ① 정기 국원회의는 교양 및 전공 시험 주간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21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국원회의와 정국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국장의 소집요구

2. 부국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국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③ 의장은 국원회의의 소집에 대한 권한을 다른 정국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국원회의의 참가 의무)

모든 수습국원과 정국원은 국원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국원회의의 경우 6개월 이상 활동한 정국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2조(국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국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 제43조(국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

국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44조(국원회의에서 국장의 책임)

① 국장은 국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국장은 서기를 지정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

#### 제45조(국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

국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 제3절 임원회의

#### 제46조(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

#### 제47조(임원회의의 성립)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제48조(임원회의의 의장)

임원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 제49조(임원회의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국장의 소집요구
2. 부국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의 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제50조(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임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 제51조(임원회의의 안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방송국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한다.

#### 제52조(임원회의 안건의 통과 요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4장 활동

#### 제53조(국원의 선발)

- ① 본 방송국은 정국원이 실시하는 선발 과정(이하 '리크루팅')을 거쳐 수습국원을 선발한다.
- ② 리크루팅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 ③ 1차 면접은 전체 면접으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장과 부국장, 정국원이 진행하고 심사한다.
- ④ 2차 면접은 부서별 면접으로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장, 부국장을 제외한 각 부서의 구성원이 진행하고 심사한다. 다만, 국정에 따라 국장이나 부국장이 2차 면접 결과에 관여할 수 있다.
- ⑤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같은 지원자를 합격시키었을 때는 그 지원자의 지망을 따라 합격 부서를 결정한다.
- ⑥ 추가 리크루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정에 따라 정국원회의를 거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4조(수습국원의 교육)

- ① 수습국원이 이수하는 교육은 전체 교육과 부서별 교육으로 나뉜다.
- ② 전체 교육은 특공대(특별히 공들인 대작), 시험방송, 모의방송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부서별 교육은 부서별로 주관하며 필수 이수 대상 부서를 특정하여 시행한다.

#### 제55조(부원)

모든 국원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 중 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다만, 국장과 부국장은 예외로 한다.

#### 제56조(팀원)

총무와 부장을 제외한 정국원은 임명된 그 해의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부터 홍보팀, 디자인팀, 아카이빙팀, 복지팀 중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 제57조(교내 방송)

- ① 교내 방송은 라디오와 특별방송으로 구분한다.
- ② 라디오는 점심에 진행되는 정규방송, 저녁에 진행되는 음악방송, 정규방송과 음악방송을 대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시험방송으로 구분한다.
- ③ 시험방송은 여름학기에 2주간 수습국원과 정국원이 함께 진행한다.
- ④ 특별방송은 국장의 승인과 책임하에 정국원이 진행한다.

#### 제58조(영상 제작)

- ① 영상은 정규 영상, 뉴스, 행사 영상, 그 밖의 영상으로 구분한다.
- ② 정규 영상과 뉴스는 정규 학기에 제작하고 배포한다.
- ③ 행사 영상은 행사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
- ④ 모든 국원은 본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의무를 진다.
- ⑤ 영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

##### 1. 공공성 지향

2. 욕설, 편향된 시각과 근거 없는 비난 배제

3. 비속어·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배제

#### 제59조(정기 행사)

- ① 정기 행사는 신입생환영방송제, 태울뮤직페스티벌, 카이스트-포스텍 학생대제전을 일컫는다.
- ② 매년 정기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행사를 중계한다.

#### 제60조(내부 행사)

- ① 국장은 리크루팅, 특공대, 모의방송제, 홈커밍을 포함한 방송국 내부 행사를 둘 수 있다.
- ② 홈커밍은 3년마다 개최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행사를 중계한다.

#### 제61조(행사 지원)

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2조(장비 지원)

타 단체에서 본 방송국의 장비를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술부장의 동의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 제63조(재정의 구성)

- ①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
- ② 운영비는 교육방송국 편성 예산, 특별 활동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하며 방송국 활동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용된다.
- ③ 자치활동비는 활동비, 활동 수입, 벌금을 포함하며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된다.

#### 제64조(활동비)

- ① 활동비는 총무가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방송국의 이름으로 국원들에게서 수금한 재정이다.
- ② 총무는 매년 2월 중 당해 연도 활동비 납부 금액 결정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장과 총무가 사전 협의한 금액이 안건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③ 활동비 납부 대상과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국원은 매 정규 학기마다 1회 납부
  2. 명예국원은 임명 직후 최초 1회 납부

#### 제65조(활동 수입)

- ① 활동 수입은 국원이 본 방송국을 통하여 하게 된 본원 내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 ② 활동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활동비로 지불해야 한다.
  1.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지불금 없음
  2. 금액이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이면 금액의 10%를 지불
  3. 금액이 50만원 초과이면 50만원의 10%와 50만원을 초과한 만큼의 5%를 합하여 지불

#### 제66조(벌금의 이용)

제2장 제9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

#### 제67조(회계 보고)

국장단은 3월과 9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 제68조(행사 참가비 차액의 처리)

활동 후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운영비로 전환한다.

#### 제69조(금전적 포상)



국장은 총무와 협의하여 본 방송국 국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

### 제70조(보칙)

이 국칙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 부 칙

### 제71조(국칙의 효력)

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 제72조(국칙 개정의 기록)

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무는 국장, 부국장, 아카이빙팀장이 진다.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명칭 본 방송국은 <u>카이스트 방송국 또는 Voice Of KAIST (VOK)라 칭한다.</u>	제1조(명칭) 본 방송국은 <u>'카이스트 방송국' 또는 'Voice of KAIST(VOK)'라 칭한다.</u>
제2조 소재 본 방송국은 <u>KAIST(이하 본원) 대전 소재지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u>	제2조(소재) 본 방송국의 소재는 <u>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u>
제3조 목적 1. 본원 언론 매체로서의 연구 및 활동 2. 건전한 여론 조성 및 이의 효율화 3.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교류 기회 제공	제3조(목적과 활동) <u>본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활동을 한다.</u> 1. 본원 언론 기구로서의 연구 및 활동 2. 건전한 여론 조성 및 이의 효율화 3.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교류 기회 제공
제4조 활동 <u>본 방송국은 방송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활동을 한다.</u>	제4조(구성) ① <u>본 방송국은 국원과 지도교수로 구성된다.</u> ② <u>본 방송국은 방송 업무를 위하여 국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을 둔다.</u> ③ <u>본 방송국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u> ④ <u>본 방송국은 홍보팀, 디자인팀, 아카이빙팀, 복지팀을 둔다.</u> ⑤ <u>국장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5조 조직 1. <u>본 방송국은 방송 업무를 위하여 국장, 지도교수, 임원을 둔다.</u> 2. <u>본 방송국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u>	제5조(국원의 구분) <u>본 방송국의 국원은 수습국원, 정국원, 명예국원으로 구분한다.</u>

<p>3. <u>본 방송국은 홍보 및 디자인팀, 아카이빙팀, 복지팀을 둔다.</u></p> <p>4. <u>국장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제6조 국장</u> 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본 방송국을 대표한다.</p>	<p><u>제6조(국원의 의무)</u> 모든 국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칙을 준수할 의무</u></li> <li>2. <u>성실히 방송국 활동을 할 의무</u></li> <li>3. <u>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존중할 의무</u></li> </ol>
<p><u>제7조 지도교수</u> 지도교수는 본원 총장이 임명하며 방송 업무 전반을 감독한다.</p>	<p><u>제7조(징계의 구성)</u> 국장은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국원에게 다음 징계 중 하나를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경위서 작성</u></li> <li>2. <u>경고 조치 부과</u></li> <li>3. <u>벌금 징수</u></li> </ol>
<p><u>제8조 임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 (1) 본 방송국은 국장, 부국장, 총무, 각 부부장 및 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을 임원으로 한다. (2) 국장, 부국장, 총무를 국장단이라 칭한다.</li> <li>2. 자격 (1) 국장과 부국장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2학기 이상의 방송국 활동을 한 정국원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2) 총무 및 각 부 부장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1학기 이하의 방송국 활동을 한 정국원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3)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li> <li>3. 선출 (1) 국장 및 부국장은 제1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다. 단, 본 조 6항 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ol>	<p><u>제8조(국원의 자격 박탈)</u> 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p>

- (2) 총무는 제2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장이 임명한다.
- (3) 각 부 부장은 각 부 재량으로 지명되며 제2회 정기 총회에서 국장이 임명한다.
- (4) 각 팀 팀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국장이 임명한다.

4. 권한

- (1) 국장은 방송국 전반적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2) 부국장은 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 (3) 총무는 방송국의 일반적 재정권을 행사하며, 각 학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정국원에 게 이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단, 정국원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4)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 업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임기

- (1) 국장과 부국장의 임기는 제2회 정기 총회까지이며, 국장과 부국장은 중임할 수 없다.
- (2)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며,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다른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6. 결원

- (1)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이 후임자를 지명한다.
- (2) 국장의 부재 시
  - ① 일시적 부재의 경우, 복귀 시까지 부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영구적 궐위의 경우,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 (3) 부국장의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국장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p>(4) 본 항에 따라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본 조 5항의 중임에 포함되지 않는다.</p> <p>7. 자격 박탈</p> <p>(1)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하에 다른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p> <p>(2)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3)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부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9조 구분</p> <p>본 방송국의 국원은 명예국원, 정국원, 수습국원으로 구분한다.</p>	<p>제9조(별금 징수)</p> <p>① <u>별금은 회의, 행사의 리허설,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국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국장이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금 징수를 면제한다.</u></p> <p>② <u>회의 지각은 개회 시각보다 늦게 참가하는 것으로 정한다.</u></p> <p>③ <u>리허설 지각과 행사 지각은 집합 시각보다 늦게 집합하는 것으로 정한다.</u></p> <p>④ <u>모든 별금의 금액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의장과 함께 의결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u></p> <p>⑤ <u>국장은 기타 사유로 인한 별금 징수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u></p>
<p>제10조 선발</p> <p>본원 재학생 중 정국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수습국원으로 선 발한다.</p>	<p>제10조(포상)</p> <p><u>국장은 본원과 방송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원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u></p>
<p>제11조 수습국원</p> <p>1. 수습국원은 방송국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며 방송국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p> <p>2. 수습국원의 교육은 전체 교육, 부서별 교육으로 나눈다. 전체 교육은 특공대, 정규 방송 교육, 모의 방송제를 포함한다.</p> <p>3.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는 본 국칙에서의 공식적인 방송국 활동 기간으로</p>	<p>제11조(수습국원)</p> <p>① <u>수습국원은 정국원에 의해 선발된 재학생 중 수습 기간에 있는 국원으로 한다.</u></p> <p>② <u>수습 기간은 선발 직후부터 정국원 임명 시점까지로 한다.</u></p> <p>③ <u>수습 기간은 이 국칙에서의 방송국 활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u></p> <p>④ <u>수습국원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u></p>

<p>인정하지 않는다. 국장의 권한으로 그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다.</p> <p>4. 국정에 따라 전체 교육은 정국원 회의, 부서별 교육은 부서별 정국원 회의를 통해 추가, 제거, 보강할 수 있다.</p>	
<p>제12조 정국원</p> <p>1.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국원에 한하여 정국원의 평가를 거쳐 국장이 정국 원에 임명한다.</p> <p>2. 정국원의 재적기간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3학기로 한다.</p>	<p>제12조(정국원)</p> <p>① 국장은 정국원의 평가를 거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국원만을 정국원에 임명한다.</p> <p>② 정국원의 임명 시점은 가을학기 첫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정국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이듬해 가을학기까지로 한다. 다만, 국장과 부국장은 임원의 임기 종료를 정국원의 임기 종료로 정한다.</p>
<p>제13조 명예국원</p> <p>1. 정국원 재적기간 동안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국원에 한하여 국장이 명예 국원으로 임명한다.</p> <p>2.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장의 판단 하에 명예국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3. 명예국원은 방송국 장비를 대여료 지불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제5장의 방송국 활동을 우선순위로 한다.</p>	<p>제13조(명예국원)</p> <p>① 국장은 임기 동안의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국원만을 명예국원에 임명한다. 다만, 정국원 이외에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도 국장의 판단하에 명예국원에 임명할 수 있다.</p> <p>② 명예국원은 방송국 장비를 대여료 지불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대여 기간이 제4장의 방송국 활동과 겹치는 경우 방송국 활동을 우선으로 장비를 대여한다.</p>
<p>제14조 의무</p> <p>1. 본 국적을 준수할 의무</p> <p>2. 성실히 방송국 활동을 할 의무</p> <p>3.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존중할 의무</p>	<p>제14조(임원의 구성)</p> <p>① 본 방송국은 국장, 부국장, 총무,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 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을 임원으로 둔다.</p> <p>② 국장, 부국장, 총무를 국장단이라 한다.</p> <p>③ 국장단,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을 운영위원회로 둔다.</p>
<p>제15조 총회</p> <p>1.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비전토론회로 구분한다.</p> <p>2. 모든 정국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명된 지</p>	<p>제15조(국장)</p> <p>① 국장은 방송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p> <p>② 국장은 방송국 외부에 대해 본 방송국을</p>

<p>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3.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 다.</p> <p>4. 총회의 의장은 국장이 된다. 단, 8조 7항 2호의 경우에는 부국장이 의장이 된 다.</p> <p>5. 매년 가을학기에 제1회 정기 총회, 제2회 정기 총회를 (총 2회) 갖는다.</p> <p>6.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국칙의 개정을 의제로 한다.</p> <p>7. 국장이나 부국장, 혹은 정국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및 비전토론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8. 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은 아래와 같다.</p> <p>(1) 국칙의 개정 및 8조 7항의 탄핵은 투표자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p> <p>(2) 국장단의 선출 및 총회 안건의 통과는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p> <p>(3) 국장단 선출 투표 결과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매 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p> <p>(4) 투표 결과 득표자 전원이 득표에서 동률을 이루거나 득표자가 2인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로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성-반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p> <p>(5) 찬성-반대투표 결과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국장단으로 선출하며 최고 찬성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찬성-반대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p> <p>(6)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 후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국장과 부국장이 국장단을 임명할 수 있다.</p> <p>9. 임원은 국장, 부국장, 부장, 총무, 팀장(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의 순서로 선출한다.</p>	<p><u>대표한다.</u></p> <p><u>③ 국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임시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u></p>
---	---

<p>10. 선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국장단을 대리인으로 하여 투표할 수 있고, 기표할 후보를 표명해야 한다. 단, 부재자의 경우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국원 혹은 국장의 동의를 얻은 정국원에 한한다.</p>	
<p>제16조 국원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원회의는 정기 국원회의, 임시 국원회의, 정국원회의로 구분한다.</li> <li>2. 매주 정기 국원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국장이 된다. 국장은 국원회의의 해산권을 가진다.</li> <li>3. 국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 국원회의와 정국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li> <li>4. 국장은 국원회의의 소집권을 다른 정국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li> <li>5. 모든 수습국원과 정국원은 국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정국원 회의의 경우, 계절학기를 제외한 2학기 이상의 방송국 활동을 한 정국원으로 대상을 한정한다.</li> <li>6. 국장은 국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서기를 지정해 그 기록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li> <li>7. 국원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 다.</li> </ol>	<p>제16조(부국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부국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u></li> <li>② <u>부국장은 국장 사고 시 복귀할 때까지 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u></li> </ol>
<p>제17조 임원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회의는 본 방송국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장이 된다.</li> <li>2. 임원회의는 과반수의 임원의 출석으로 성립된다.</li> <li>3. 임원회의는 방송국의 중요 의결 사항을 의제로 한다.</li> <li>4. 임원회의는 국장의 판단 하에 국원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li> </ol>	<p>제17조(총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총무는 본 방송국의 회계를 담당하고 일반적 재정권을 행사한다.</u></li> <li>② <u>총무는 각 학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정국원에게 재정권을 행사한 명세를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국원은 보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u></li> </ol>
<p>제18조 방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은 시험방송, 정규방송, 특별방송으로 구분한다.</li> <li>(1) 시험방송은 정규방송을 대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여름학기에 2주간 진행되며 수습국원과 정국원이 함께 진행한다.</li> </ol>	<p>제18조(부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부장은 제작부장, 기술부장, 아나운서부장, 보도부장을 일컫는다.</u></li> <li>② <u>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u></li> <li>③ <u>부장은 타 부서나 타 팀과의 철저한 업무</u></li> </ol>



<p>(2) 1일 총 30분 이상의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p> <p>(3) 정국원은 국장의 승인 및 책임 하에 특별방송을 할 수 있다.</p>	<p><u>경계 보존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써야 한다.</u></p>
<p>제19조 영상</p> <p>1. 영상은 정규영상, 행사 영상, 뉴스, 다큐멘터리, 기타 영상으로 구분한다.</p> <p>(1) 정규 영상은 매년 가을학기 제작 및 배포, 뉴스는 정규학기 제작 및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p> <p>(2) 국정에 따라 (1)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3) 국장은 당 해 정규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4) 국장은 정규학기에 뉴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5) 국장은 행사 영상과 기타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6) 정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3)의 회의에서 결정한다.</p> <p>(7)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4)의 회의에서 결정한다.</p> <p>(8) (5), (6)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 회의에서 국장 혹은 국장이 지정한 국원이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회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p> <p>2. 영상의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p> <p>(1) 공공성을 지향하여 제작한다.</p> <p>(2) 편향된 시각을 담지 않으며 특정 인물 및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을 배제한다.</p> <p>(3)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p>	<p>제19조(팀장)</p> <p>① <u>팀장은 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 복지팀장을 일컫는다.</u>  <u>복지팀장은 부국장이 겸임한다.</u></p> <p>② <u>팀장은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u></p> <p>③ <u>팀장은 타 부서나 타 팀과의 철저한 업무 경계 보존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써야 한다.</u></p>
<p>제20조 정기행사</p> <p>1. 신입생 환영 방송제, 가요제, 카이스트-포스텍 학생대제전을 정기행사라 칭한다.</p> <p>2. 매년 정기 행사를 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사를 추가, 변경, 생략할 수 있다.</p>	<p>제20조(임원 후보의 자격)</p> <p>① <u>국장, 부국장의 자격은 1년 이상 활동한 정국원으로 한다.</u></p> <p>② <u>총무, 부장, 팀장의 자격은 그 해 임명된 정국원으로 한다.</u></p> <p>③ <u>모든 임원의 자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u></p>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p>제21조 내부행사</p> <p>1. 국장이 방송국 내부 행사를 둘 수 있다.</p> <p>2. 3년마다 흠커밍을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1조(임원의 선출)</p> <p>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한다.</p> <p>② 국장과 부국장은 제1회 정기 총회에서 국장단 선출 선거로 선출한다.</p> <p>③ 부장은 제2회 정기 총회에서 각 부서의 재량으로 선출한다.</p> <p>④ 총무는 제2회 정기 총회에서 국장단 선출 선거로 선출한다.</p> <p>⑤ 팀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전임자의 지명으로 선출한다.</p>
<p>제22조 행사지원</p> <p>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업무를 행한다.</p>	<p>제22조(국장단 선출 선거)</p> <p>① 국장단은 국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② 국장단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국장단직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국원 모두이다.</p> <p>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p> <p>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p> <p>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p> <p>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p> <p>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p> <p>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p> <p>⑦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p>

	<p><u>때 의장은 국장과 부국장이 후임 국장단을 지명하여 선출하는 것과 지명된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u></p>
<p>제23조 기재지원</p> <p>타 단체에서 본 방송국의 기재를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술부 장의 동의하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기재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3조(임원의 임명)</p> <p>① 임원은 국장이 임명한다.</p> <p>② 국장, 부국장, 총무, 부장은 제2회 정기 총회 폐회 직후 임명된다.</p> <p>③ 팀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임명된다.</p>
<p>제24조 재정</p> <p>1.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국비로 구성된다.</p> <p>(1) 운영비는 교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한다.</p> <p>(2) 국비는 국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의 일부를 포함한다.</p> <p>2. 본 방송국을 통하여 국원이 본원 내외 활동에서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수당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당의 10%, 5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는 10%, 그리고 초과한 금액의 5%를 국비로 지불 해야 한다.</p> <p>3. 상항에서, 수당을 받은 국원은 총무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p> <p>4. 국장단은 각각 3월, 9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 할 의무를 갖는다.</p> <p>5.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의 목적을 위한 활동 혹은 행사 후 잔액을 차액이라 하며,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운영비, 외부 지원금의 차액은 국비로 전환한다.</p>	<p>제24조(임원의 임기)</p> <p><u>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후임자의 임명 시점까지이다.</u></p>
<p>제25조 수당</p> <p>본 방송국 국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5조(임원직의 중임과 겸임)</p> <p>① <u>모든 임원직은 중임할 수 없다.</u></p> <p>② <u>총무, 부장, 팀장은 국장단직을 제외한 다른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u></p>
<p>제26조 징계</p> <p>1. 본 방송국 국원이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해당 국원 에</p>	<p>제26조(임원의 탄핵)</p> <p>① 국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p>

<p>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에 대하여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p>	<p>② <u>5명 이상의 정국원은 연서를 통해 국장이나 부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u></p> <p>③ <u>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u></p>
<p>제27조 포상 본 방송국 국원이 본원과 방송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경우 에 국장이 총무의 동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p>	<p>제27조(임원의 권위 시 조치)</p> <p>① <u>국장의 권위 시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u></p> <p>② <u>부국장, 총무, 부장, 팀장의 권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4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u></p> <p>③ <u>임원의 권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28조 보칙 본 국칙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국원회의를 거쳐 국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p>	<p>제28조(지도교수의 임명과 역할) <u>지도교수는 본원 총장이 임명하며 방송 업무 전반을 감독한다.</u></p>
<p>&lt;부칙&gt; 1. 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2. 본 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은 국장과 부국장, 혹은 서기가 책임지기로 한다.</p>	<p>제29조(총회의 구분) <u>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비전토론회로 구분된다.</u></p>
<p>&lt;신 설&gt;</p>	<p>제30조(총회의 성립) <u>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1년 이하인 명예국원을 합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u></p>
<p>&lt;신 설&gt;</p>	<p>제31조(총회의 의장) <u>총회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다만, 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국장으로 한다.</u></p>
<p>&lt;신 설&gt;</p>	<p>제32조(총회의 소집)</p> <p>① <u>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u></p> <p>1. <u>제1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중간고사 전 마지막 회의의 직전 회의(5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2. <u>제2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u></p>

	<p>회의의 직전 회의(13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임시 총회와 비전토론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장의 소집요구</li> <li>2. 부국장의 소집요구</li> <li>3. 5명 이상 정국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ol>
<신 설>	<p>제33조(총회 참가 의무)</p> <p>모든 정국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p>
<신 설>	<p>제34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신 설>	<p>제35조(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p> <p>총회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장 및 부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p>
<신 설>	<p>제36조(국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별 조항 개정 안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li> <li>② 전면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li> </ol>
<신 설>	<p>제37조(부재자의 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국원 또는 국장의 동의를 받은 정국원에 한한다.</li> <li>②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의사를 의장에게 표명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li> </ol>
<신 설>	<p>제38조(국원회의의 구분)</p> <p>국원회의는 정기 국원회의, 임시 국원회의, 정국원회의로 구분한다.</p>
<신 설>	<p>제39조(국원회의의 의장)</p> <p>국원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p>
<신 설>	<p>제40조(국원회의의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기 국원회의는 교양 및 전공 시험 주간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21시에 의장이 소집한다.</li> </ol>

	<p>② <u>임시 국원회의와 정국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p> <p>1. 국장의 소집요구</p> <p>2. 부국장의 소집요구</p> <p>3. 5명 이상 정국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③ <u>의장은 국원회의의 소집에 대한 권한을 다른 정국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신 설>	<p>제41조(국원회의 참가 의무)</p> <p><u>모든 수습국원과 정국원은 국원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국원회의의 경우 6개월 이상 활동한 정국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u></p>
<신 설>	<p>제42조(국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u>국원회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u></p>
<신 설>	<p>제43조(국원회의 안건의 통과 요건)</p> <p><u>국원회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u></p>
<신 설>	<p>제44조(국원회의에서 국장의 책임)</p> <p>① <u>국장은 국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u></p> <p>② <u>국장은 서기를 지정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u></p>
<신 설>	<p>제45조(국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p> <p><u>국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u></p>
<신 설>	<p>제46조(임원회의의 구성)</p> <p><u>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u></p>
<신 설>	<p>제47조(임원회의의 성립)</p> <p><u>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u></p>
<신 설>	<p>제48조(임원회의의 의장)</p> <p><u>임원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u></p>
<신 설>	<p>제49조(임원회의의 소집)</p> <p><u>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p> <p>1. 국장의 소집요구</p> <p>2. 부국장의 소집요구</p> <p>3. 5명 이상의 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신 설>	<p>제50조(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u>임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u>
<신 설>	<u>제51조(임원회의의 안건)</u> <u>임원회의의 안건은 방송국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한다.</u>
<신 설>	<u>제52조(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u> <u>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u>
<신 설>	<u>제53조(국원의 선발)</u> <u>① 본 방송국은 정국원이 실시하는 선발 과정(이하 '리크루팅')을 거쳐 수습국원을 선발한다.</u> <u>② 리크루팅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u> <u>③ 1차 면접은 전체 면접으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장과 부국장, 정국원이 진행하고 심사한다.</u> <u>④ 2차 면접은 부서별 면접으로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장, 부국장을 제외한 각 부서의 구성원이 진행하고 심사한다. 다만, 국정에 따라 국장이나 부국장이 2차 면접 결과에 관여할 수 있다.</u> <u>⑤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같은 지원자를 합격시키었을 때는 그 지원자의 지망을 따라 합격 부서를 결정한다.</u> <u>⑥ 추가 리크루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정에 따라 정국원회의를 거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u>
<신 설>	<u>제54조(수습국원의 교육)</u> <u>① 수습국원이 이수하는 교육은 전체 교육과 부서별 교육으로 나뉜다.</u> <u>② 전체 교육은 특공대(특별히 공들인 대작), 시험방송, 모의방송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③ 부서별 교육은 부서별로 주관하며 필수 이수 대상 부서를 특정하여 시행한다.</u>
<신 설>	<u>제55조(부원)</u> <u>모든 국원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 중 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u>

	<p>활동해야 한다. 다만, 국장과 부국장은 예외로 한다.</p>
<신 설>	<p>제56조(팀원)  <u>총무와 부장을 제외한 정국원은 임명된 그 해의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부터 홍보팀, 디자인팀, 아 카이빙팀, 복지팀 중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u></p>
<신 설>	<p>제57조(교내 방송)  ① <u>교내 방송은 라디오와 특별방송으로 구분한다.</u>  ② <u>라디오는 점심에 진행하는 정규방송, 저녁에 진행하는 음악방송, 정규방송과 음악방송을 대비 한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시험방송으로 구분한다.</u>  ③ <u>시험방송은 여름학기에 2주간 수습국원과 정국원이 함께 진행한다.</u>  ④ <u>특별방송은 국장의 승인과 책임하에 정국원이 진행한다.</u></p>
<신 설>	<p>제58조(영상 제작)  ① <u>영상은 정규 영상, 뉴스, 행사 영상, 그 밖의 영상으로 구분한다.</u>  ② <u>정규 영상과 뉴스는 정규 학기에 제작하고 배포한다.</u>  ③ <u>행사 영상은 행사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u>  ④ <u>모든 국원은 본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의무를 진다.</u>  ⑤ <u>영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u>  1. <u>공공성 지향</u>  2. <u>욕설, 편향된 시각과 근거 없는 비난 배제</u>  3. <u>비속어·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배제</u></p>
<신 설>	<p>제59조(정기 행사)  ① <u>정기 행사는 신입생활영방송제, 태울뮤직페스티벌, 카이스트-포스텍 학생대제전을 일컫는다.</u>  ② <u>매년 정기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③ <u>필요한 경우 행사를 중계한다.</u></p>



<p>&lt;신 설&gt;</p>	<p>제60조(내부 행사)</p> <p>① 국장은 리크루팅, 특공대, 모의방송제, 흠커밍을 포함한 방송국 내부 행사를 둘 수 있다.</p> <p>② 흠커밍은 3년마다 개최한다.</p> <p>③ 필요한 경우 행사를 중계한다.</p>
<p>&lt;신 설&gt;</p>	<p>제61조(행사 지원)</p> <p>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62조(장비 지원)</p> <p>타 단체에서 본 방송국의 장비를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술부장의 동의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63조(재정의 구성)</p> <p>①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p> <p>② 운영비는 교육방송국 편성 예산, 특별 활동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하며 방송국 활동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용된다.</p> <p>③ 자치활동비는 활동비, 활동 수입, 벌금을 포함하며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된다.</p>
<p>&lt;신 설&gt;</p>	<p>제64조(활동비)</p> <p>① 활동비는 총무가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방송국의 이름으로 국원들에게서 수금한 재정이다.</p> <p>② 총무는 매년 2월 중 당해 연도 활동비 납부 금액 결정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장과 총무가 사전 협의한 금액이 안건에 명시되어야 한다.</p> <p>③ 활동비 납부 대상과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정국원은 매 정규 학기마다 1회 납부</p> <p>2. 명예국원은 임명 직후 최초 1회 납부</p>
<p>&lt;신 설&gt;</p>	<p>제65조 (활동 수입)</p> <p>① 활동 수입은 국원이 본 방송국을 통하여 하게 된 본원 내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다.</p>

	<p>② <u>활동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활동비로 지불해야 한다.</u></p> <p>1.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지불금 없음</p> <p>2. 금액이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이면 금액의 10%를 지불</p> <p>3. 금액이 50만원 초과이면 50만원의 10%와 50만원을 초과한 만큼의 5%를 합하여 지불</p>
<신 설>	<p>제66조(벌금의 이용)</p> <p>제2장 제9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u>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u></p>
<신 설>	<p>제67조(회계 보고)</p> <p>국장단은 3월과 9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u>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u></p>
<신 설>	<p>제68조(행사 참가비 차액의 처리)</p> <p>활동 후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u>운영비로 전환한다.</u></p>
<신 설>	<p>제69조(금전적 포상)</p> <p>국장은 총무와 협의하여 본 방송국 <u>국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u></p>
<신 설>	<p>제70조(보칙)</p> <p>이 국칙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u>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u></p>
<신 설>	<p>제71조(국칙의 효력)</p> <p>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u>효력을 지닌다.</u></p>
<신 설>	<p>제72조(국칙 개정의 기록)</p> <p>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u>책무는 국장, 부국장, 아카이빙팀장이 진다.</u></p>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적 및 경위

### 서문

본 전부개정의 경우 개별 조항에 목적 및 경위를 작성하기 어려워, 본 서류는 각 목적 및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예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에는 '2021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제10판, 2021)'을 참고하였다.

### 목차

1. 장, 절 수준의 변화
2. 형식 구조 정비
3. 권력 집중 방지 및 민주성 강화
4. 재정 관련 사항 구체화
5. 현행 활동 반영
6. 문장 표현 수정

## 1. 장, 절 수준의 변화

현행 자치규칙은 장 수준에서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고 적절하지 않은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방송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국원이 '<제2장> 조직'에 포함되지 않고 '<제2장> 조직'보다 나중 순서에 있어 자치규칙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하고 있다. '<제7장> 징계 및 포상'은 국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따로 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장 수준에서 해당 명칭을 삭제하고 국원과 관련된 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또, 현행 자치규칙에서는 절 수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장의 내용이 비효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자치규칙의 '<제4장> 회의'는 제15조 총회(10개 항), 제16조 국원회의(7개 항), 제17조 임원회의(4개 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에 포함된 항 개수나 목 수준의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므로 절 수준을 도입하여 자치규칙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위 이유로 현행 자치규칙의 장 수준의 명칭과 순서를 변경하고 절 수준을 도입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2장 구성원
<신 설>	제1절 국원
<신 설>	제2절 임원
<신 설>	제3절 지도교수
<제3장> 국원	제3장 회의
<신 설>	제1절 총회
<신 설>	제2절 국원회의
<신 설>	제3절 임원회의
<제4장> 회의	제4장 활동
<제5장> 활동	제5장 재정
<제6장> 재정	제6장 기타
<제7장> 징계 및 포상	<삭 제>
<제8장> 기타	<삭 제>
부칙	부칙

## 2. 형식 구조 정비

현행 자치규칙은 조, 항, 호의 구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는 큰 주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모두 조 수준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어떤 부분에서는 큰 주제를 조 이름으로 사용하고 아래에 항을 많이 두어 서술하고 있다. 몇 개의 조에는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나서 자치규칙에 군더더기로 남아있다.

또, 현행 자치규칙은 형식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규칙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호 수준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거나 용언의 한자어 어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자치규칙에는 '-다'로 끝나는 문장형 서술이 많이 되어있다. 더하여 일반적으로 항에서는 원 글머리(①, ②, ③, ...) 호에서는 점 글머리(1., 2., 3., ...)를 사용하나 현행 자치규칙에서는 항에서는 점 글머리, 호에서는 앞뒤에 괄호를 넣은 글머리((1), (2), (3), ...)를 사용하고 있다.

위 이유로 항 개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수정하였고, 자치규칙과 일반적인 규칙(법규 등)의 형식적 유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아래는 예시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임원 6. 결원 (1)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이 후임자를 지명한다. (2) 국장의 부재 시 ① 일시적 부재의 경우, 복귀 시까지 부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영구적 궐위의 경우,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3) 부국장의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국장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4) 본 항에 따라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본 조 5항의 중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부국장) ① 부국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부국장은 국장 사고 시 복귀할 때까지 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임원의 궐위 시 조치) ① 국장의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② 부국장, 총무, 부장, 팀장의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4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③ 임원의 궐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비전토론회로 구분한다.  2. 모든 정국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명된 지	제29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비전토론회로 구분된다.  제33조(총회 참가 의무) 모든 정국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p>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3.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p>4. 총회의 의장은 국장이 된다. 단, 8조 7항 2호의 경우에는 부국장이 의장이 된다.</p> <p>5. 매년 가을학기에 제1회 정기 총회, 제2회 정기 총회를 (총 2회) 갖는다.</p> <p>6.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국칙의 개정을 의제로 한다.</p> <p>7. 국장이나 부국장, 혹은 정국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및 비전토론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중략)</p> <p>(3) 국장단 선출 투표 결과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매 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p> <p>(4) 투표 결과 득표자 전원이 득표에서 동률을 이루거나 득표자가 2인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로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p>	<p>제34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p>제30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1년 이하인 명예국원을 합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p>제3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다만, 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국장으로 한다.</p> <p>제3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 1. 제1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중간고사 전 마지막 회의의 직전 회의(5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회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의 직전 회의(13주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총회와 비전토론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국장의 소집요구 2. 부국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국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제22조(국장단 선출 선거) ① 국장단은 국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국장단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국장단직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국원 모두이다. 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p>
---	---

<p>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성-반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p> <p>(5) 찬성-반대투표 결과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국장단으로 선출하며 최고 찬성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찬성-반대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p> <p>(6)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 후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국장과 부국장이 국장단을 임명할 수 있다.</p> <p>9. 임원은 국장, 부국장, 부장, 총무, 팀장(홍보팀장, 디자인팀장, 아카이빙팀장)의 순서로 선출한다. (후략)</p>	<p>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 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p> <p>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 보를 선출한다.</p> <p>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li> <li>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li> </ol> <p>⑦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의장은 국장과 부국장이 후임 국장단을 지명하여 선출하는 것과 지명된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p> <p>제21조(임원의 선출)</p> <p>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한다. (후략)</p>
<p>목적 및 경위</p>	<p>형식 구조 정비</p>

### 3. 권력 집중 방지 및 민주성 강화

현행 자치규칙 중 몇몇 조문은 특정 인원이 국책을 남용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 특정 소수 임원의 동의만 있으면 다른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국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 조문이 있다.

위 이유로 관련 조문에 회의의 의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아래는 예시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임원 7. 자격 박탈 (1)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하에 다른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부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탄핵) ① 국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의 정국원은 연서를 통해 국장이나 부국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③ 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
제26조 징계 1. 본 방송국 국원이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해당 국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에 대하여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국원의 자격 박탈) 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b>목적 및 경위</b>	권력 집중 방지



#### 4. 재정 관련 사항 구체화

현행 자치규칙의 '<제6장> 재정' 부분은 형식 구조에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보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VOK는 내부적으로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비를 국원들에게서 걷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에서 활동비를 걷는 목적 등이 드러나지 않아 활동비를 적절한 목적으로 쓰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또 원래 활동비로 걷히고 있었던 벌금도 징수 목적과 방식, 이용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암묵적 내규로만 징수하고 있어 유동성이 크고 징수 근거를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

위 이유로 '<제6장> 재정'을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 재정</p> <p>1.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국비로 구성된다.</p> <p>(1) 운영비는 교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한다.</p> <p>(2) 국비는 국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의 일부를 포함한다.</p> <p>2. 본 방송국을 통하여 국원이 본원 내외 활동에서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수당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당의 10%, 5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는 10%, 그리고 초과한 금액의 5%를 국비로 지불해야 한다.</p> <p>3. 상황에서, 수당을 받은 국원은 총무의 요구에 따른 의무가 있다.</p> <p>4. 국장단은 각각 3월, 9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 할 의무를 갖는다.</p> <p>5.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의 목적을 위한 활동 혹은 행사 후 잔액을 차액이라 하며,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운영비, 외부 지원금의 차액은 국비로 전환한다.</p> <p>제25조 수당</p> <p>본 방송국 국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3조(재정의 구성)</p> <p>①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p> <p>② 운영비는 교육방송국 편성 예산, 특별 활동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하며 방송국 활동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용된다.</p> <p>③ 자치활동비는 활동비, 활동 수입, 벌금을 포함하며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된다.</p> <p>제64조(활동비)</p> <p>① 활동비는 총무가 국원들의 복지를 위해 방송국의 이름으로 국원들에게서 수금한 재정이다.</p> <p>② 총무는 매년 2월 중 당해 연도 활동비 납부 금액 결정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의무를 진 다. 이 경우 국장과 총무가 사전 협의한 금액이 안건에 명시되어야 한다.</p> <p>③ 활동비 납부 대상과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정국원은 매 정규 학기마다 1회 납부</p> <p>2. 명예국원은 임명 직후 최초 1회 납부</p> <p>제65조 (활동 수입)</p> <p>① 활동 수입은 국원이 본 방송국을 통하여 하게 된 본원 내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다.</p> <p>② 활동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활동비로 지불해야 한다.</p>

	<p>1.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지불금 없음</p> <p>2. 금액이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이면 금액의 10%를 지불</p> <p>3. 금액이 50만원 초과이면 50만원의 10%와 50만원을 초과한 만큼의 5%를 합하여 지불</p> <p>제66조(벌금의 이용) 제2장 제9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p> <p>제67조(회계 보고) 국장단은 3월과 9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p> <p>제68조(행사 참가비 차액의 처리) 활동 후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운영비로 전환한다.</p> <p>제69조(금전적 포상) 국장은 총무와 협의하여 본 방송국 국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재정 관련 사항 구체화</p>

## 5. 현행 활동 반영

현행 자치규칙 중 일부는 계속 해왔던 활동과 동떨어지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p>제19조 영상</p> <p>1. 영상은 정규영상, 행사 영상, 뉴스, 다큐멘터리, 기타 영상으로 구분한다.</p> <p>(1) 정규 영상은 매년 가을학기 제작 및 배포, 뉴스는 정규학기 제작 및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p> <p>(2) 국정에 따라 (1)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3) 국장은 당 해 정규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4) 국장은 정규학기에 뉴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5) 국장은 행사 영상과 기타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p> <p>(6) 정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3)의 회의에서 결정한다.</p> <p>(7)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4)의 회의에서 결정한다.</p> <p>(8) (5), (6)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 회의에서 국장 혹은 국장이 지정한 국원이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회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p> <p>2. 영상의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p> <p>(1) 공공성을 지향하여 제작한다.</p> <p>(2) 편향된 시각을 담지 않으며 특정 인물 및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을 배제한다.</p> <p>(3)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p>	<p>제58조(영상 제작)</p> <p>① 영상은 정규 영상, 뉴스, 행사 영상, 그 밖의 영상으로 구분한다.</p> <p>② 정규 영상과 뉴스는 정규 학기에 제작하고 배포한다.</p> <p>③ 행사 영상은 행사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p> <p>④ 모든 국원은 본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의무를 진다.</p> <p>⑤ 영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p> <p>1. 공공성 지향</p> <p>2. 욕설, 편향된 시각과 근거 없는 비난 배제</p> <p>3. 비속어·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배제</p>
<p><b>목적 및 경위</b></p>	<p>현행 활동 반영 (현행 자치규칙) 제19조 제1항 2호~8호: 저러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 (개정안) 제58조 제3항: 행사 영상도 제작하므로 추가</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팀원) 총무와 부장을 제외한 정국원은 임명된 그 해의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부터 홍보팀, 디자인팀, 아카이빙팀, 복지팀 중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목적 및 경위	<p>현행 활동 반영</p> <p>2021년 정기 총회에서 팀 체제가 도입되고 팀원도 국원의 활동의 일부로 들어가야 하므로 추가</p>	

현 행		개 정 안
<p>&lt;부칙&gt;</p> <p>1. 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p> <p>2. 본 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은 국장과 부국장, 혹은 서기가 책임지기로 한다.</p>		<p>제71조(국칙의 효력)</p> <p>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지닌다.</p> <p>제72조(국칙 개정의 기록)</p> <p>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무는 국장, 부국장, 아카이빙팀장이 진다</p>
목적 및 경위	<p>현행 활동 반영</p> <p>2021년 정기 총회 이후 서기가 아카이빙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서기 활동은 아카이빙팀장이 관리하므로 아카이빙팀장으로 수정</p>	

## 6. 문장 표현 수정

현행 자치규칙에는 중의적 표현이 있거나, 가독성이 좋은 문장 구조가 아니거나,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조문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총회 (전략) 3.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후략)	제30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국원과 임명된 지 1년 이하인 명예국원을 합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b>목적 및 경위</b>	문장 표현 수정 (성립 조건이 정국원 + [임명된 지 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 과반수]인지, [정국원 + 임명된 지 2학기 이하인 명예국원]의 과반수인지 모호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명예국원 1. 정국원 재직기간 동안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국원에 한하여 국장이 명예국원으로 임명한다. 2.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장의 판단 하에 명예국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명예국원은 방송국 장비를 대여료 지불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제5장의 방송국 활동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13조(명예국원) ① 국장은 임기 동안의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국원만을 명예국원에 임명한다. 다만, 정국 원 이외에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도 국장의 판단하에 명예국원에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국원은 방송국 장비를 대여료 지불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대여 기간이 제4장의 방 송국 활동과 겹치는 경우 방송국 활동을 우선으로 장비를 대여한다.
<b>목적 및 경위</b>	문장 표현 수정 ('-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 수당 본 방송국 국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금전적 포상) 국장은 총무와 협의하여 본 방송국 국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b>목적 및 경위</b>	문장 표현 수정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VOK에는 정해진 봉급 자체가 없음)

# **심의안건 별첨자료**

---

심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제165조제1항 중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을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제1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제1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

제16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제1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li> <li>2.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li> <li>3.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u></li> </ol>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u></li> <li>2. <u>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lt;신 설&gt;</u></li> <li>2. <u>&lt;신 설&gt;</u></li> <li>3. <u>&lt;신 설&gt;</u></li> <li>4. <u>&lt;신 설&gt;</u></li> </ol> </li> <li>3. <u>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4. <u>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li> <li>5. <u>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6.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u></li> </ol>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u></li> <li>2. <u>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2. <u>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li> <li>3. <u>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4.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li> </ol> </li> <li>3.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li> </ol>

<p>7.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p>	<p>4. <u>&lt;삭 제&gt;</u>  5. <u>&lt;삭 제&gt;</u>  6. <u>&lt;삭 제&gt;</u>  7. <u>&lt;삭 제&gt;</u></p>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li> <li>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li> <li>3. <u>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li> <li>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u></li> </ol> </li> <li>4.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lt;신 설&gt;</u></li> <li>2. <u>&lt;신 설&gt;</u></li> </ol> </li> <li>5. <u>&lt;신 설&gt;</u></li> </ol>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li> <li>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li> <li>3. <u>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li> <li>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u></li> </ol> </li> <li>4. <u>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u></li> <li>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u></li> </ol> </li> <li>5.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li> </ol>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li> <li>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결산</u>을 사전심의한다.</li> <li>4. <u>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u>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u>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u></li> </ol>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li> <li>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 및 결산</u>을 사전심의한다.</li> <li>4. <u>&lt;삭 제&gt;</u></li> </ol>
--	---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 1. 개정 목적 및 경위

심의 원칙과 회계 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안 심의로 바꾸기 위함. 현행 회계 분기는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이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로 되어 있어 그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큼.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하여 회계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기존 2분기·3분기, 4분기, 1분기 주기로 1년에 3번 심의하던 예산을 상반기(2분기·3분기), 하반기(4분기·1분기)로 1년에 2번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 심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구 및 재정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1.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2.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목적 및 경위	1. <b>본회 회칙 작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b> 가. 본회 회칙에서 의결기구의 권한과 그 권한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가 집행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2장에 의결기구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가 집행하는 사항 또한 그 산하기구의 업무와 권한 등이 규정된 장에 관련 조항이 있음. 예를 들어, 학생회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권한에 관하여서는 그 권한에 따라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중략)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p>'전학대회는 (중략)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학생회칙 제90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p> <p>학생회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된 관한에 관하여서는 그 권한에 따라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등에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p> <p>나. 학생회칙 제168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학생회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따라서 학생회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사전심의를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p> <p><b>2.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b></p> <p>학생회칙 제168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은 명확하며 이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학생회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전심의를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불명확하게 만듦.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사전심의를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p>
--	---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u>로 한다.</li> <li>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신 설&gt;</li> <li>2. &lt;신 설&gt;</li> <li>3. &lt;신 설&gt;</li> <li>4. &lt;신 설&gt;</li> </ol> </li> <li>3. 1분기: <u>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4. 2분기: <u>봄학기 개강일부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li> <li>5. 3분기: <u>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ol>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로 한다.</li> <li>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분기: <u>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2. 2분기: <u>봄학기 개강일부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li> <li>3. 3분기: <u>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li> <li>4. 4분기: <u>가을학기 개강일부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li> </ol> </li> </ol>
---	--

<p>6.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u></p> <p>7.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p>	<p>3.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p> <p>4. &lt;삭 제&gt;</p> <p>5. &lt;삭 제&gt;</p> <p>6. &lt;삭 제&gt;</p> <p>7. &lt;삭 제&gt;</p>
<p><b>목적 및 경위</b></p>	<p><b>1. 회계 분기 기준의 명확성을 높여 회계 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b></p> <p>현행 회계 분기는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이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로 되어 있어 그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큼.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이므로 가을학기 종강 전이 될 수도 있는 등 명확성이나 체계성이 떨어짐. 이에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하여 회계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p>

<p>제167조(심의 원칙)</p> <p>1. <u>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p> <p>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p> <p>3. <u>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u></p>	<p>제167조(심의 원칙)</p> <p>1. <u>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p> <p>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p> <p>3. <u>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u></p> <p>4. <u>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u></p> <p>5.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p>
---	---

<p>4.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p> <p>1. &lt;신 설&gt;</p> <p>2. &lt;신 설&gt;</p> <p>5. &lt;신 설&gt;</p>	
<p>목적 및 경위</p>	<p><b>1.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통일</b></p> <p>가. 가운데점의 사용례 및 해석례</p> <p>1) 가운데점은 ①단어를 열거할 때, ②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③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 ④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를 연결할 때 사용함(“법령에 있어서, 가운데점(·)과 반점(·)의 차이”. 법제처 법제 Q&amp;A, 2009. 6. 15.)</p> <p>2) 가운데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데점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데점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임.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정부입법지원센터, 2015. 3. 27.)</p> <p>3) 이처럼 유사한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운데점은 사용과 해석에서 명확성을 저해함.</p> <p>나. '예산안 그리고 결산'이라는 조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운데점을 사용한 '예산안·결산'에서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p> <p><b>2.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심의 원칙 개편</b></p> <p>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은 직전 반기 결산과 해당 반기 예산안을 함께(병합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이는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충돌하여 모순이 되기도 함.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의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법리적 근거는 없으며, 정부 기관, 타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함. 법리적 이유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하는 원칙으로 변경하고자 함.</p> <p><b>3. 예산안 및 결산을 연 3회 심의하여야 하는 심의 원칙 개편</b></p> <p>기존 2분기·3분기, 4분기, 1분기 주기로 1년에 3번 심의하던 예산을 상반기(2분기·3분기), 하반기(4분기·1분기)로 1년에 2번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 심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p> <p>즉, 심의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심의 주기를 상반기, 4분기, 1분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변경함.</p>



	<p>기존 하반기(4분기·1분기)를 4분기와 1분기로 나누어 1년에 3번 예산을 심의하던 이유는 11월 총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학생회장 당선인이 1분기(겨울학기) 동안 진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기존 심의 원칙의 목적과 취지는 개정된 학생회칙 제170조를 활용하여 유지되고 달성될 수 있음.</p>
--	--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li> <li>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결산</u>을 사전심의한다.</li> <li>4. <u>사전심의를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u>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li> </ol>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li> <li>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 및 결산</u>을 사전심의한다.</li> <li>4. &lt;삭 제&gt;</li> </ol>
<p>목적 및 경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통일</b> '예산안 그리고 결산'이라는 조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운뎃점을 사용한 '예산안·결산'에서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167조와 동일함)</li> <li>2. <b>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로서(학생회칙 제51조), 본회 회칙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할 수 있음.</li> <li>나. 중앙운영위원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구성원, 부총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됨.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음이 당연함.</li> <li>다. 기층기구의 추가경정예산안, 선집행예산안, 사후승인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li> </ol> </li> </ol>

라. 이처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며 전학대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후 략>

위와 같이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사업계획, 결산 및 사업보고를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학생회칙 제168조제4항처럼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사전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보고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아니하고 보고로 대체할 경우에는 전학대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음.

---

심의안건 제3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

##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재정운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로 하고,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예산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준용한다.</u></li> <li>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li> <li>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li> </ol>	<p>제15조(예산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적용한다.</u></li> <li>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li> <li>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li> </ol>

##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

### 1. 개정 목적 및 경위

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

###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안 비율)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준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제15조(예산안 비율)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적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b>목적 및 경위</b>	<p><b>1. 정확한 표현 사용</b></p> <p>가.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적용'은 특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함.</p> <p>나.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대항목 비율은 수정할 수 없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적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됨.</p> <p><b>2. 경직된 예산안 심의 개편</b></p> <p>가. 현행 규정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매 반기 초'라는 제약을 규정하여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사전에 진행될 수 없도록 함.</p>

나. 이를 개정하여 시기적 제약을 해소하고, 무조건 반기 시작 이후에만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개편하고자 함.

### **3. 권한과 역할의 정립**

집행조정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 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에서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별 규정에서 이를 정립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